

대강제보이 관한 건설부 고시 제94호 공포

대한민국건설부령 제94호

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9호,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,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한다.

1980년 4월 8일 건설부장관

—불연재료,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의 기준—

1. 한국공업규격 KS F 2271 "건축물외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"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

난연 1급이라고 판정되는 재료를 불연재료

난연 2급이라고 판정되는 재료를 준불연재료

난연 3급이라고 판정되는 재료를 난연재료

로 한다.

다만, 도면도상이나 외장재료의 침부 또는 바탕재료에 따라 방화 성능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1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연재료,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 또는 공법은 건설부장관이 따로 정한다.

—비고— 1항은 전생산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시료에 한하는 것으로 협의의 시험방안과 같다.